

■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3.5.1>

**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**

구분	적용대상	산정기준
환수금	1. 법 제74조의2제3항 제1호·제1호의2·제1호의3 해당자	명예퇴직수당 전액
	2. 법 제74조의2 제3항 제2호 해당자	명예퇴직수당 전액 - {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× (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+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/2) }
	3. 법 제74조의2 제3항 제3호 해당자	가.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.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전액
정산금	법 74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임용 후의 근무기간이 환수금 산정 대상기간(명예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-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)보다 짧은 자	재임용 시 환수금액(이자 제외) - { 명예퇴직수당 월 기준액 × (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+ 명예퇴직한 날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의 재임용 후 근무 월수 /2) }

비고

- "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"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수당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1의 "퇴직당시(「국가공무원법」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) 월봉급액의 반액"을 말한다.
- "재임용 후 근무 월수"는 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말한다. 다만, 시간제공무원의 재임용후 근무월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 

$$\text{재임용일의 다음 달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} \times \frac{\text{시간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{\text{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$$
- 별표 1의 명예퇴직수당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(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)이 경과된 후 재임용되는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재임용후 퇴직 시의 정산금 지급액은 재임용 당시의 환수금을 초과하지 못한다.